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7
----------	------

제출연월일 : 2015. 9.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및 서식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1) 다량배출사업장 근거 법조문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수정하고,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일괄 제외 규정을 서울시 조례준칙에 의거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면적기준 30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으로 개선 (안 제2조제3호)
- (2)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조례상의 구청장의 책무에 삽입 (안 제5조제2항)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 가능 대상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 규정과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서식 삭제(안 제16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나.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 삭제 (안 제8조제6항, 안 제16조, 안 제17조)

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조문 원용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안 제19조, 별표4)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14조의3 제1항
-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
-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
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
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의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
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
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중 본문과 단서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각각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고, 같은조 제5항제3호 중 “제2조”를 “제2조제2
호·제5호·제12호”로 하며, 같은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
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을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하고,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며, 같은조 제4항과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
하는 사람”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하고, “시행규칙”을 “같은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항 제1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
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
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호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6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고,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내용 등”으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으로 하며, “1월말”을 “2월말”로 한다.

제16조제5호 중 “30일”을 “1개월”로, “별지 제1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으로, “제15조제2항제1호”를 “제1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으로, 같은 호 라목의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을”을 “내용을”으로 하며, 같은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제17조제1호 중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 4와 같다”를 “영제38조의4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 제8조의 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의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p>

현 행	개 정 안
<p>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p> <p>5. ~ 6. (생략)</p>	<p>4. ----- ----- ----- -----그 밖의 ----- -----.</p> <p>5. ~ 6. (현행과 같음)</p>
<p>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 ----- ----- ----- -----.</p> <p>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p> <p>① ~ ③ (생략)</p> <p>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u>감량의무이행계획서</u>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u>감량의무이행계획서</u>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p> <p>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p> <p>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u>감량의무이행계획서</u>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p> <p>⑦ (생략)</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 ----- -----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 ----- -----.</p> <p>⑤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 ----- -----</p> <p>⑥ ----- ----- -----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등 -----.</p> <p>⑦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p> <p>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u>폐기물재활용신고자</u>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u>당해</u>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u>당해</u>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영 ----- ----- ----- ----- 폐기물처리신고자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해당 ----- -----.</p> <p>⑤ ----- ----- 해당 ----- ----- ----- ----- -----.</p>

현행	개정안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p> <p>② ~ ⑦ (생략)</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제5항 및 제6항-----</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p> <p>① (생략)</p> <p>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p> <p>2. ~ 3. (생략)</p>	<p>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량배출사업장-----</p> <p>---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p> <p>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p> <p>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p>	<p>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p> <p>-----</p> <p>-----</p> <p>1.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6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p> <p>-----내용 등-----</p> <p>-----</p>

현 행	개 정 안
<p>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u>별지 제2호 서식</u>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u>별지 제3호 서식</u>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u>별지 제1호서식</u>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 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u>감량의무이행계획</u>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 다. (생략)</p> <p>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u>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u>을 변경한 경우</p> <p><u><신설></u></p>	<p>4. ----- ----- ----- <u>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u> ----- ----- <u>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u> ----- -----2월말 -----.</p> <p>5. ----- ----- <u>1개월</u> ----- ----- <u>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u> ----- ----- (제15조의2제3항) ----- ----- <u>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를</u>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 <u>내용을</u> -----</p> <p>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p>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u>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u>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p> <p>2. 폐기물처리업자, <u>재활용신고자</u>,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의 <u>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u>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 ----- .</p> <p>1. ----- ----- <u>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u> ----- -----</p> <p>2. -----, <u>폐기물처리신고자</u>, ----- ----- ----- -----</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 ----- <u>에 따른</u> ----- ----- ----- <u>에 따른</u>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u>별표 4</u>와 같다.</p> <p>② (생략)</p>	<p>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 <u>영</u> <u>제38조의4</u>에 따른다.</p> <p>② (현행과 같음)</p>